

제 44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 당사는 상법 제 542 조의 4 및 당사 정관 제 21 조의 정함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 이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것으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님의 건승과 다행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 365 조 및 당사 정관 제 19 조에 의거하여 제 44 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4 년 3 월 25 일(월) 오전 9 시
2. 장 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로 24, 주식회사 우진 1 층 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① 감사(감사위원회)보고 ② 영업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 안건

제 1 호 의안 : 제 44 기(2023.01.01~20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익배당 예정 내용 : 보통주 1 주당 150 원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별첨 2. 정관 개정(안) 신·구 대조문 참고)

제 3 호 의안 : 사내이사 이재상 선임의 건(재선임, 임기 3 년)

- 성명/생년월일/사외이사 여부/이사분리선출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이재상	1973.11.30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특수관계인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후보자 주된 직업/세부 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등

성명	주된 직업	세부 경력		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재상	(주)우진 대표이사	2012.03.23 2015.04.01 2016.02.23 ~ 현재	(주)우진 이사 (주)우진 상무이사 (주)우진 대표이사 사장	해당사항 없음

제 4 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정종욱 선임의 건(신규선임, 임기 3 년)

- 성명/생년월일/사외이사 여부/이사분리선출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정종욱	1970.11.05	사외이사	분리 선출	-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후보자 주된 직업/세부 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성명	주된 직업	세부경력		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정종욱	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2001 ~ 200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해당사항 없음
		2003 ~ 2006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2006 ~ 2007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 검사	
		2007 ~ 2009	법무법인 율촌	
		2009 ~ 2015	삼성그룹 법무실 상무, 전무	
		2016 ~ 2022	삼성생명 법무팀장(전무, 부사장)	
		2017 ~ 2019	삼성생명 준법감시인(겸직)	
		2023 ~ 현재	Kim & Chang 법률사무소	

※ 본 후보자 선임 안건은 상법 제 542 조의 12 조에 의거하여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는 안건 임

제 5 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2024 년도 보수한도액 : 5,000,000,000 원)

4. 경영참고사항 등의 통지 및 공고

상법 제 542 조의 4 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woojininc.com>)게재, 당사의 본점 및 지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제도(Shadow Voting)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기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 년 9 월 16 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7.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 368 조의 4 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60 조 제 5 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권유 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4 년 03 월 15 일 09 시~2024 년 03 월 24 일 17 시

(기간 중 24 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 시부터 가능하며, 마지막 날은 오후 5 시까지만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 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 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 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 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8.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참석장, 위임장(주주 및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or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9. 기타사항

당사 주주총회에서는 기념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별첨1]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 내용 포함)

[별첨2] 정관 개정(안) 신·구 대조문

[별첨3] 코로나-19 (COVID-19) 관련 주총 안내

2024 년 3 월 5 일

주식회사 우진

대표이사 이재상 (직인 생략)

주주총회 참석장

본인은 주식회사 우진 제44기 정기주주총회에 주주로서 참석합니다.

(주주총회 참석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주주총회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실 질 주 주 참 석 자			
성 명	(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개인:생년월일	
주 소			
보유주식수	주		
참석 구분	주주 직접참석 () 대리인 참석 ()	대리참석자 와의 관계	
<p>※ 아래 사항은 “대리인 참석” 위임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참석 위임장) 본인은 주식회사 우진의 주주로서 제44기 정기주주총회에 대리참석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주주총회 결의(의결권 행사 등)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년 3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주주 (인)</p>			

대 리 참 석 자			
성 명	(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개인:생년월일	
주 소			
관 계			

※ 지참물

- 1) 본 인 : 주총참석장, 신분증
- 2) 대리인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 및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or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주우진 정관 신·구 대조문>

현행	개정(案)	개정사유
<p>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1. ~ 15. <현행과 동일></p> <p><신설> <u>16. 전 각항</u> 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p>	<p>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1. ~ 15. <현행과 동일></p> <p><u>16.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u></p> <p><u>17. 전 각항</u> 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p>	<p>사업 목적 추가 및 자구수정</p> <p>(2-1호 의안)</p>
<p>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p> <p>① ~ ④ <현행과 동일></p> <p>⑤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u>주주 외의 자</u>에게 <u>신주를 배정하는 경우</u>,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p>	<p>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p> <p>① ~ ④ <현행과 동일></p> <p>⑤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u>신주를 배정하는 경우</u>,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p>	<p>자구수정</p> <p>(동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내용 참고하여 문구 정정)</p> <p>(2-2호 의안)</p>
<p>제31조(이사의 수)</p> <p>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u>10명 이내</u>로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p> <p><신설></p>	<p>제31조(이사의 수)</p> <p>①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u>8명 이내</u>로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p> <p>② <u>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u></p>	<p>이사의 수 조정 및 자구수정</p> <p>(제34조 제2항 이동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표준규정 반영)</p> <p>(2-3호 의안)</p>
<p>제34조(이사의 보선)</p> <p>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1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u>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1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u></p>	<p>제34조(이사의 보선)</p> <p>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1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삭제></p>	<p>자구수정</p> <p>(제31조 제2항으로 이동)</p> <p>(2-4호 의안)</p>
<p>제39조(이사회회의 구성과 소집)</p> <p>① <현행과 동일></p> <p>② 이사회는 <u>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의 전일까지 각 이사 및 감사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u></p>	<p>제39조(이사회회의 구성과 소집)</p> <p>① <현행과 동일></p> <p>② 이사회는 <u>각 이사가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선임한 의장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을 소집권자로 한다.</u></p>	<p>자구수정</p> <p>(상법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표준규정 등 내용에 맞춰 문장 등 정정)</p> <p>(2-5호 의안)</p>

<p>두 등으로 통지하여 소집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④ 이사 및 감사위원회(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⑤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이사회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의 소집권자로 한다.</p>	<p>③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④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의장 포함)는 이사회 회일을 정하여, 적어도 회일 12시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두 등으로 통지하여 소집한다.</p> <p>⑤ 이사 및 감사위원회(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4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⑥ 이사회 의장은 <u>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u></p>	
<p>제42조(위원회)</p> <p>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p> <p>1. 감사위원회</p> <p><신설></p> <p>②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p> <p>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9조,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42조(위원회)</p> <p>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p> <p>1. 감사위원회</p> <p>2. 지속가능경영위원회</p> <p>3. 기타 이사회가 회사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p> <p>②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p> <p>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9조,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지속가능경영위원회 신설</p> <p>(2-6호 의안)</p>
<p>제53조(이익배당)</p> <p>①, ② <현행과 동일></p> <p>③ 제1항의 배당은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p>	<p>제53조(이익배당)</p> <p>①, ② <현행과 동일></p> <p>③ <u>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u></p>	<p>배당 선진화 개선 방안의 이행이 가능할 수 있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표준 규정 내용에 맞춰 정정</p> <p>(2-7호 의안)</p>
<p>제54조(중간배당)</p> <p>① 회사는 6월 30일 24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 의결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p>	<p>제54조(중간배당)</p> <p>① <u>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u></p> <p>② <u>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u></p>	<p>배당 선진화 개선 방안의 이행이 가능할 수 있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표준 규정 내용에 맞춰 정정</p> <p>(2-8호 의안)</p>

<현행과 동일>, 이하 생략 ~	<현행과 동일>, 이하 생략 ~	
-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u>본 개정정관은 제4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추가 (2-9호 의안)</p>

[코로나-19 (COVID-19) 관련 주총 안내]

당사의 주주총회는 코로나-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입니다.

- COVID-19의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하여 직접 참석 없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전자투표 활용을 권장 드립니다.
- 주주총회 참석 시 총회장 입장 전 '디지털 온도계' 등으로 주주님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측정 결과에 따라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등은 부득이하게 총회장 출입이 제한(별도의 공간에서 의결권 행사 가능)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해 질병관리청 가이드(환기가 어려운 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 및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에 따라 주주총회 당일에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길 적극 권고 드립니다. 더불어 방역을 위해 총회장 음식물 반입은 금지되며, 총회장에 비치하던 음료 등도 제공되지 않을 예정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만약, 주주총회 개최 전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일시, 장소 등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재 공시(공고) 등을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